

비정년트랙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21.4.26		16		
2	2023.5.8		17		
3	2024.7.29		18		
4	2024.11.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비정년트랙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비정년트랙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시행세칙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비정년트랙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원업적평가) 비정년트랙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교육중점교수에 대해서는 교육영역, 채용형 산학협력 중점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영역 <5.산학협력>에 한하여 <별첨>의 내용을 반영한다.

제4조(재계약임용 기준) ① 비정년트랙교원의 재계약 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 비정년트랙교원 재임용 평가 기준 <개정 2023.5.8>

구 분	최초재임용			2차 재임용부터 적용		
	평가 기간 ²	요건		평가 기간 ²	요건	
교육중점교수 ¹	3개 학기	총점 650점 이상 (교육업적 450점, 봉사업적 120점 이상)		4개 학기	총점 800점 이상 (교육업적 600점, 봉사업적 160점 이상)	
		연구 대체상한 ⁴	40점		연구 대체상한 ⁴	50점
채용형산학협력 중점교수	3개 학기	총점 400점 이상 (연구<5.산학협력> 200점)		4개 학기	총점 500점 이상 (연구<5.산학협력> 250점)	
		간접비 대체상한 ⁵	150점		간접비 대체상한 ⁵	200점
연구중점교수	3개 학기	연구업적 150점 이상 (주저편수 ³ 2편이상)		4개 학기	연구업적 200점 이상 (주저편수 ³ 3편이상)	
공통사항	1. 평가 기간중 강의평가 시행 내규에 의거 기말 강의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2학기 이상 연속하여 주의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과목으로 취득한 점수를 배점하지 않음. 2. 보직수행으로 책임시수를 감면받는 교원의 경우, 일반교원으로 시수를 환산하여 교육 업적점수를 산출함(수강생수, 강의평가)					

주)

1. 교육중점교수 중 어학을 담당하는 외국인어학교원의 경우 임용 이후 4개 학기 동안의 책임 시수를 충족해야 하며, 봉사업적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최초 재임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단, 보직수행 등의 사유로 책임시수를 감면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평가기간은 최초 재계약 임용에 한하여 3개 학기로 하며, 2차 재계약임용부터는 최초 재계약 임용 평가에 사용된 학기 이후의 학기부터 적용하여 4개 학기를 기준으로 함
3. 주저편수 기준 :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소속교원은 SCI급, 항공·경영대학,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소속교원은 SCI급 1편을 포함한 주저편수를 의미함<개정 2021.4.26.>
4. 연구 대체상한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연구영역(2.1~4.2)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봉사업적 점수(교육중점교수 대상)를 의미함.

5. 간접비 대체상한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연구영역(4.1)“국내·국제 연구비수탁”의 간접비로 대체할 수 있는 산학협력 점수(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 대상)를 의미하고, 아래 산식에 따라 배점한다.

항목	적용 구분	배 점
간접비 [책임]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항공물), 인문자연학부(자연계열)	$[(1+2/n+1)*(간접비/2)] \div 100만원 \times 2점$
	항공·경영대학(경영, 운항),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 영아학과, 자유전공학부	$[(1+2/n+1)*(간접비/2)] \div 100만원 \times 20점$
간접비 [공동]	항공·경영대학(경영),인문자연학부(인문사 회), 영아학과, 자유전공학부	$[(1/n+1)*(간접비/2)] \div 100만원 \times 2점$
	항공·경영대학(경영, 운항),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 영아학과, 자유전공학부	$[(1/n+1)*(간접비/2)] \div 100만원 \times 20점$

※ 항공·경영대학 항공교통물류학부 소속 법학, 관제실기 전공 관련 교원은 항공·경영대학(경영, 운항)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준용)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하되, <표 1>, <표 1-1>은 2022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 계약임용, 재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5년 3월 1일부터 전체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중전 시행세칙의 적용) 상기 적용대상 외 교원은 중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③ (중전 시행세칙과 개정 시행세칙을 동시에 적용받는 재직교원의 평가 방법) 2025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 대상이 되는 재직교원은 중전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해당기간의 영역별 점수와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해당기간의 영역별 점수를 각각 만족해야 한다.
- ④ (중전 시행세칙과 개정 시행세칙을 동시에 적용받는 재직교원의 평가 실적 인정 방법) 중전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실적 중 중전 시행세칙의 임용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실적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 실적은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비정년트랙교원 별도 적용 항목<개정 2023.5.8., 2024.7.29., 2024.11.4.>

구분	세부내용			
교육 중점 교수	- 교육업적 :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을 적용. 단, “교육개선기여도”를 추가로 반영함			
	항목	배점	비고	
	신규교과목 개발* 및 운영	과목당 25점	점수상한 없음	
	수업개선프로그램 수강실적	건당 5점		
	대학본부 및 학부(과) 교육관련 자문	건당 5점		
외국인학생 교육지도 실적	학생당 10점 (학기 기준)	상한 학기당 400점		
채용형 산학 협력 중점 교수	- 연구업적 :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별표2>을 적용. 단, “5.산학협력”의 5.30이하는 아래와 같이 반영함			
	번호	항목	배점	비고
	5.3	현장실습지도	건당 10점, 학기당 20점	점수 상한 없음
	5.4	산학협동 및 지도 <삭제 2023.5.8>	건당 10점 -	
	5.5	창업친화활동	10점~25점	
	5.6	산업체연계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건당 25점	
	5.7	국제표준화기고문	건당 5점	
	5.8	진로(취업)지도교수	40점	
	5.9 ~ 5.16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별표2와 동일		
	5.17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	[1/n*운영수익]/100만원*5점	
	5.3 (현장실습지도)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정규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 학기당 20점, 정규교과목 이외의 현장실습지도는 건당 10점 (정규교과목으로 배정한 경우 과목 내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지도 제외)			
5.4(산학협동 및 지도) 산업체 기술 경영관련 강의,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본교 학생들에게 취업관련 특강을 실시한 경우 건당 10점				
5.5(창업친화활동) 창업관련 업무수행 시 다음과 같이 배점함				
- 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 : 학생들의 창업현장실습지도를 위한 실적을 인정하며 정규교과목 담당 시 학기당 20점, 정규교과목 이외의 창업현장실습지도 시 건당 10점				
- 창업실습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 학생들의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교과목신규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 실적 건당 25점 부여하며, 프로그램 운영 참여 시 실적 건당 10점 부여 <개정 2023.5.8>				
- 창업동아리 지도 : 창업관련 동아리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경우 10점 부여하며 봉사업적으로 중복인정하지 않음				
5.6(산업체연계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업체연계, 취업, 창업을 위한 교과목 신규개발 및 산업체연계 신규 프로그램개발, 인턴쉽 프로그램 유치(인턴쉽참여 회사 신규발굴, MOU체결 등) 실적 건당 25점 부여하며, 프로그램 운영 참여 시 실적 건당 10점 부여 <개정 2023.5.8>				
5.7(국제표준화 기고문) 국제표준화기고문은 국제표준기구에 기고하여 기고문 번호가 할당 되고 홈페이지에 해당 기고문이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건당 5점				
5.8(진로(취업)지도교수) 취업지원팀에서 지정한 진로(취업) 지도교수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점수를 인정하며, 봉사업적으로 중복인정 하지 않음				
5.17(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책임교수로 활동하여 운영수익*이 발생한 경우, 산식에 따라 배점				
*운영수익은 해당 프로그램의 수입 중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의미함				